http://dx.doi.org/10.17703/JCCT.2022.8.1.93

JCCT 2022-1-11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홍효석*

Hong, Hyo Seog*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협동조합 7대 원칙

Abstract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social cooperatives and the results of the fourth round of fact-finding,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focusing on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is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use of resource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s defined as "a process of change that advances the needs and desires of all future generations". It contains the meaning of connecting a sustainable society to future generations through harmony and balance, rather than opposing concepts of social valu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rrang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ntain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and their connection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for social contribution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rofit model along with the public interest. Third, partnerships should be strengthened. When examining the public values and objectives that social cooperatives want to realize through this study, the three scop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ole of important actors in pursu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at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re facing, would. Therefore, the sustainability issue of social cooperative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goals and values pursued by social cooperatives are harmonious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not only their own efforts but also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is will have to be presented.

Key words : Social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14,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Author: justin@gnu.ac.kr

Dept. of Accounting,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1. 서 론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11월 말 현재 설립·인가된 전체협동조합은 21,878이며, 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18,343개, 일반협동조 합연합회 91개, 사회적협동조합 3,421개,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20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3개이다[1]. 2012년 12월 말 51개이던 협동조합이 10년이 지난 현재와 비교 해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규모라 하겠다. 2020년 3월 3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에 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일반협동조합・일반협동조 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 종협동조합연합회로 각각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다른 문자나 유사한 문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협동조합 등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제2 조). 또한, 협동조합 등의 설립목적을 조합원의 복리증 진과 상부상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용에 부 응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협동조합의기본원칙 역시 일 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7원칙 중 조합원을 위한 최대한의 봉사,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 영 그리고 투기목적이나 행위 금지, 일부 조합원의 이 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하였다(제6조)[2].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금지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한하여 투입자원의 확충과 유효한 활용여건을 부여하고 있으며(제98조), 비조합원과의 거래허용(제95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95조의 2),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2].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 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3]. 여기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지속가능성 범위를 담고 있다.[4] 이러한 지속가능성 발전의 개념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대립의 개념이 아닌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취지이며[5].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의 영역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성과와 관련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협동조합 기본 7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개념으로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이 변화해야하는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타 논문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회적협동 조합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 장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가 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

최초의 사회적협동조합은 1970년대 말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으며,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 회서비스 제공이 이들의 주요한 목적이었다[6]. 지역 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과 함께 자발적으로 생겨난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LAW 381)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 제도를 통해 개념화시켰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 며 1998년에는 포루트칼의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1999년에는 그리스의 '유한책 임 사회적협동조합'과 스페인의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 (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2001년에는 프랑스의 '공익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of Collective Interest)' 과 캐나다에 '사회연대 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 이 설립되었다[7-10].

우리나라는 2012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사 회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로는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와 상법에 따른 회사설 립이 곤란한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취약 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하였다[10-12].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기 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일반협동조합・일 반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각각 명칭을 사용하고 이 를 다른 문자나 유사한 문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 록 하여 협동조합 등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 였다(제2조). 또한, 협동조합 등의 설립목적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용 에 부응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 리법인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제23조) 및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제22조)을 지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제21조, 제24조), 지역사회에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제45조, 제93조)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13].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일자리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 1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사업을 40%이상 수행하여야 하고(제93조),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이상 적립하도록 하고,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여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투입자원의 확충 및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였다. 청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국고 등에 귀속되게 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허용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은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 하겠다.

표 1.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General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 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 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 우선출자 발행 협 동조항은 의무사항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 를 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유사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2.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표 2. 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1월 말 현재 설립·인가된 전체 협동조합은 21,878개이며(이종협동조합연합회 3개 미포함), 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18,343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1개, 사회적협동조합 3,421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개이다[1].

표 2. 협동조합 설립현황(2021.11)

Table 2. Cooperative establishment status(2021.11)

		일반협동조합					사회	일반	사회
구분	계	소계	사업 자	다중 이해 관계 자	직원	소비 자	사외 적협 동조 합	협동 조합 연합 회	적협 동조 합연 합회
조합수	21,878	18,343	13,456	3,697	651	539	3,421	91	20
(%)	100.0	83.9	61.5	16.9	3.0	2.5	15.6	0.4	0.1
		(100)	(73.4)	(20.2)	(3.5)	(2.9)			

표 3,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별·산업별 설립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설립순위를 보면(산업분류는

표 3.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별 · 업종별 설립현황(2021.11)] Table 3. Social Cooperative establishment status by Local · Industry(2021.11).

	_								
산업 분류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Α	28	26	15	17	-	4	2	5	16
В	-	-	1	1	-	-	1	-	-
С	-	41	1	5	1	1	6	1	28
D	1	22	9	4	2	-	1	-	5
Е	2	15	1	-	2	-	1	1	8
F	2	12	2	-	-	-	2	-	8
G	4	21	2	9	2	1	1	1	18
Н	1	1	1	-	-	-	-	-	1
I	1	9	-	2	2	1	1		6
J	7	11	-	2	-	3	2	2	17
K	-	-	-	-	-	-	-	-	-
L	_	6	_	-	1	-	1	1	9
M	2	12	1	2	2	-	4	1	19
N	7	52	25	16	10	7	14	10	55
О	3	13	1	2	-	-	2	1	3
P	45	219	54	31	10	21	41	16	153
Q	67	268	89	80	79	42	40	30	288
R	21	50	12	14	6	2	8	3	54
S	4	21	4	5	4	3	5	3	39
U	3	9	8	4	-	2	-	-	9
미포함	1	3	-	-	-	1			2
기조심									
합계	199	811	225	194	121	88	131	75	738
		811 울산	225 인천	194 전남	121 전북	88 제주	131 충남	75 충북	738 합계
합계 산업	199								
합계 산업 분류	199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합계 산업 분류 A	199 세종	울산 9	인천 2	전남	전북 10	제주	충남	충북 7	합계 183
합계 산업 분류 A B	199 세종 4 -	울산 9 -	인천 2 1	전남 20 -	전북 10 -	제주 3 -	충남 15 -	충북 7 -	합계 183 2
합계 산업 분류 A B	199 세종 4 - 1	울산 9 - 6	인천 2 1 4 4 4	전남 20 - 1	전북 10 - 1	제주 3 -	충남 15 - 4	충북 7 - 3	합계 183 2 104
합계 산업 분류 A B C	199 세종 4 - 1 -	울산 9 - 6 - 1	인천 2 1 4 4	전남 20 - 1	전북 10 - 1 4 - 2	제주 3 - -	충남 15 - 4 5	충북 7 - 3	합계 183 2 104 59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199 M종 4 - 1 -	울산 9 - 6	인천 2 1 4 4 4	전남 20 - 1 2 -	전북 10 - 1 4 -	제주 3 - -	충남 15 - 4 5 1	충북 7 - 3 -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199 세종 4 - 1 -	울산 9 - 6 - 1 - 3	인천 2 1 4 4 4	전남 20 - 1 2 -	전북 10 - 1 4 - 2 2	제주 3 - - - 1 -	충남 15 - 4 5 1	충북 7 - 3 - - 4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5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199 세종 4 - 1 -	울산 9 - 6 - 1 - 3 -	인천 2 1 4 4 4 3 - 1	전남 20 - 1 2 - 1 1 -	전북 10 - 1 4 - 2	제주 3 - - - 1 -	충남 15 - 4 5 1 1 - -	충북 7 - 3 - - 4 -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199 세종 4 1 1 	울산 9 - 6 - 1 - 3 - 2	인천 2 1 4 4 4 -	전남 20 - 1 2 - 1 1 - - 1	전북 10 - 1 4 - 2 2	제주 3 - - - 1 -	충남 15 - 4 5 1 1 - - 2	충북 7 - 3 - - 4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199 세종 4 - 1 - - - 1 - - -	울산 9 - 6 - 1 - 3 - 2	인천 2 1 4 4 4 3 - 1 - 3	전남 20 - 1 2 - 1 1 - - 1	전북 10 - 1 4 - 2 2	제주 3 - - 1 - 1 -	충남 15 - 4 5 1 1 - -	충북 7 - 3 - - 4 -	함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199 세종 4 1 1 	울산 9 - 6 - 1 - 3 - 2	인천 2 1 4 4 4 3 - 1 - 3	전남 20 - 1 2 - 1 1 - - 1	전북 10 - 1 4 - 2 2 - 1	제주 3 - - 1 - 1 - -	충남 15 - 4 5 1 1 - - - 2 -	충북 7 - 3 - - 4 -	함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0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199 세종 4 - 1 - - - 1 - - - - - - - - - -	울산 9 - 6 - 1 - 3 - 2 - -	인천 2 1 4 4 4 3 - 1 - 3 - 1	전남 20 - 1 2 - 1 1 - - 1 -	전북 10 - 1 4 - 2 2 - 1	제주 3 - - 1 - 1 - - 1 1	충남 15 - 4 5 1 1 - - - 2 - 1	중북 7 - 3 - - 4 - - - 1 -	합계 183 2 104 59 37 67 5 25 51 0 20 48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199 세종 4 - 1 - - - 1 - - -	울산 9 - 6 - 1 - 3 - 2 - - - -	인천 2 1 4 4 4 3 - 1 - 3	전남 20 - 1 2 - 1 1 1 1 - 2 8	전북 10 - 1 4 - 2 2 - 1	제주 3 - - 1 - 1 - - 1 1 - 1 4	충남 15 - 4 5 1 1 - - - 2 -	충북 7 - 3 - - 4 -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0 20 48 289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199 세종 4 - 1 - - 1 - - - - - - - - - - - - - -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인천 2 1 4 4 4 3 - 1 - 3 - 1 1 1 4	전남 20 - 1 2 - 1 1 - 1 2 8 1	전북 10 - 1 4 - 2 2 - 1 - 1 4 1 1 1 14 -	제주 3 - - 1 - 1 - - 1 1 4 1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중북 7 - 3 - - 4 - - - 1 - - 1 -	합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199 세종 4 - 1 - - 1 - - - - - - - - 7 - 6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17	인천 2 1 4 4 4 3 - 1 - 3 - 1 1 1 4 3 - 3 - 1 1 - 1 1 4 - 3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남 20 - 1 2 - 1 1 - - 1 - - 28 1 18	전북 10 - 1 4 - 2 2 - 1 - 1 - - 2 1 - - 2 - 1 - - - -	제주 3 - - 1 - 1 - - 1 1 4 1 1 16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중북 7 - 3 - - 4 - - - 1 - - 10 - 30	함계 183 2 104 59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99 세종 4 - 1 - - 1 - - - - - - - 7 - - 6 5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17 28	인천 2 1 4 4 4 3 1 3 1 1 1 4 3 3 1 1 1 4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남 20 - 1 2 - 1 1 - - - 1 - - 2 8 1 18 82	전북 10 - 1 4 - 2 2 - 1 1 2 14 - 2 4 - 97	제주 3 - - 1 - 1 - - 1 1 4 1 16 14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41	중북 7 - 3 - - 4 - - - 1 - - 10 - 30 34	함계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1,320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99 세종 4 - 1 - - 1 - - - - - - - - - - - - - -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17 28 8	인천 2 1 4 4 4 3 - 1 - 3 - 1 1 1 4 - 3 - 3 - 3 - 1 1 1 4 - 3 - 3 - 3 - 3 - 3 - 3 - 3 - 3 - 3 -	전남 20 - 1 2 - 1 1 1 - 2 82 1 18 82 4	전북 10 - 1 4 - 2 2 - 1 1 - 2 14 - 2 4 - 7 7	제주 3 - - 1 - 1 - - 1 1 4 1 16 14 10	흥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41 41	중북 7 - 3 - - 4 - - - 1 - - 10 - 30 34 8	합계 183 2 104 59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1,320 219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99 세종 4 1 1 6 5 2 1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17 28 8	인천 2 1 4 4 4 3 1 3 1 1 14 33 36 6	전남 20 - 1 2 - 1 1 1 - 2 82 1 18 82 4 3	전북 10 - 1 4 - 2 2 - 1 1 - 2 14 - 2 4 - 7 4 97 7	제주 3 - - 1 - 1 - - 1 1 4 1 16 14 10 1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41 4	 충북 7 3 - 4 - - 10 - 30 34 8 2 	합계 183 2 104 59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1,320 219 109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199 세종 4 1 -	울산 9 - 6 - 1 - 3 - - - - - 6 2 17 28 8 -	인천 2 1 4 4 4 3 - 1 - 3 3 - 1 1 14 - 3 3 6 6 6 6 2	전남 20 - 1 2 - 1 1 28 1 18 82 4 3 2	전북 10 - 1 4 - 2 2 - 1 1 - 2 14 - 2 4 - 7 7	제주 3 - - 1 - 1 - - 1 1 4 1 16 14 10 1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41 4 4 2	 충북 7 3 - 4 - - 10 - 30 34 8 2 1 	計划 183 2 104 59 37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1,320 219 109 48
합계 산업 분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99 세종 4 1 1 6 5 2 1	울산 9 - 6 - 1 - 3 - 2 - - - - 6 2 17 28 8	인천 2 1 4 4 4 3 1 3 1 1 14 33 36 6	전남 20 - 1 2 - 1 1 1 - 2 82 1 18 82 4 3	전북 10 - 1 4 - 2 2 - 1 1 - 2 14 - 2 4 - 7 4 97 7	제주 3 - - 1 - 1 - - 1 1 4 1 16 14 10 1	충남 15 - 4 5 1 1 - - - 2 - 1 10 - 24 41 4	 충북 7 3 - 4 - - 10 - 30 34 8 2 	합계 183 2 104 59 37 67 5 25 51 0 20 48 289 29 758 1,320 219 109

산업분류 코드로 표시하였음), 경기도(811개), 서울(738개), 경남(225개), 강원도(199개), 경북(194개)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지역별·산업별 설립현황의 사업별 합계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이 1,320개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P)이 758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289개,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이 219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과 교육서비스업(P)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업(Q)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1]

이상의 설립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과 교육서비스업(P)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별 설립현황을 보면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3,421개중 보건복지부가 1,323개로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부가 518개로 1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

년차별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된 협동조합 실태를 보면, 표 4. 년차별 협동조합 실태조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운영률은 2차 54.6%, 3차 53.4%, 4차 54.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조합원수는 2차 46.8명, 3차 61.6명, 4차 67.0명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의 활동이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인력측면에서 평균 취업자수는 2차 3.9명, 3차, 5.3명, 4차 6.1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정규직비율에서는 2차 73.2%, 3차 81.0%, 4차 70.8%로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역시 3차 43.3%에서 4차 4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영업측면에서 자산규모는 4차 23,454만원으로 3차 14,022만원에 비해 67.2% 증가하였으며, 출자금 규모역시 4차 5,744만원으로 3차 4,046만원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2차1,935만원, 3차 373만원, 4차 1,458만원으로 년차별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평균 매출액 규모는 년차별로 증가하는 규모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여 및 재투자비율은 2차 802만원, 3차 881만원, 4차 899만원으로 년차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14].

표 4. 년차별 협동조합 실태조사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Annual Survey on Cooperatives

구분 2차 실태조사 2016년 말 기준 2018년 말 기준 20247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				2월 시테크기		
변동조합수 (2.35개 10,615개 (법인 13,016개) 은 영조합수 (2.957개 5,100개 7,050개 (운영률) (54.6%) (53.4%) (54.2%) 조합원수 13.9만명 31.3만명 47.4만명 (평균) (46.8명) (61.6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명균) (3.9명) (13.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6.1명) 교요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4.4명) 정규직비율 73.2% 81.0% 70.8% 전해구의 144만원 비정규 92만원 158.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구분		, - , ,			
(신고·인가) (범인 9,547개) (범인 13,016개) 운영조합수 2,957개 5,100개 7,050개 (운영률) (54.6%) (53.4%) (54.2%) 조합원수 13.9만명 31.3만명 47.4만명 (평균) (46.8명) (61.6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평균) (8.2명) (13.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평균) (2.9명) (4.3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전과 144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144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거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무나 수 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억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 –		2016년 말 기순		
운영조합수 (유영률) (54.6%) (53.4%) (54.2%) 조합원수 (13.9만명 31.3만명 47.4만명 (평균) (46.8명) (61.6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명균) (3.9명) (5.3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9균) (2.9명) (4.3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전규직 144만원 청규직 147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청규직 95.0% 처구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6.7만원 11,361만원 (6.74만원 15.20만원 13.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되어 1,935만원 2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6,235개	,	, ,	
(운영률) (54.6%) (53.4%) (54.2%) 조합원수 13.9만명 31.3만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4.4명) 전하고 144만원 청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158.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5,74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평균 802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4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신고·인가)		(법인 9,547개)	(법인 13,016개)	
조합원수 (46.8명) (61.6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57.9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5.3명) (6.1명) 괴고용자수 (3.9명) (5.3명) (6.1명) 괴고용자수 (2.9명) (4.3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전규직비율 73.2% 81.0% 70.8% 기업률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비정규 92만원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모양권 당기순이익 기억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억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운영조합수	2,957개	5,100개	7,050개	
(평균) (468명) (61.6명) (67.0명)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평균) (8.2명) (13.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괴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정규직비율 73.2% 81.0% 70.8% 정규직비율 기3.2% 청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청규직 158.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7,662명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되어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영	(운영률)	(54.6%)	(53.4%)	(54.2%)	
중사자수 24,248명 68,851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4.4명) 전하고 13,25명 81.0% 70.8% 원평균급여 73.2% 81.0% 70.8% 전하고 144만원 청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청규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7,662명 7,662명 11,243명 (2.8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평균 당기순이익 기억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조합원수	13.9만명	31.3만명	47.4만명	
(평균) (8.2명) (13.5명) (12.1명)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3.9명) (5.3명) (6.1명)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월평균급여 경규직 144만원 비정규 92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7,662명 7,662명 11,243명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가 차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평균)	(46.8명)	(61.6명)	(67.0명)	
취업자수 (명균) (3.9명) (5.3명) (6.1명) 괴고용자수 (9평균) (2.9명) (4.3명) (4.4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월평균급여 경규직 144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기소를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7.662명 (7.662명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명균 대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종사자수	24,248명	68,851명	85,295명	
(평균) (3.9명) (5.3명) (6.1명) 괴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8균) (2.9명) (4.3명) (4.4명) 정규직비율 73.2% 81.0% 70.8% 월평균급여 청규직 144만원 비정규 22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158.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기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당기순이익 명균 명균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평균)	(8.2명)	(13.5명)	(12.1명)	
지고용자수 (2.9명) (4.3명) (4.4명) (명균) (2.9명) (4.3명) (4.4명) (4.4명) (명균) (2.9명) (4.3명) (4.4명) (4.4명) (명균) (2.9명) (4.3명) (4.4명) (4.48명) (4.48R) (4.4		취업자수	11,605명	27,129명	42,712명	
(평균) (2.9명) (4.3명) (4.4명) 정규직비율 73.2% 81.0% 70.8% 월평균급여 경규직 144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정규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무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평균)	(3.9명)	(5.3명)	(6.1명)	
전규직비율 73.2% 81.0% 70.8% 경규직 144만원 성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정규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되,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정구자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피고용자수	7,967명	20,409명	31,335명	
정규식비율 13.2% 81.0% 70.8% 70.8% 청규식 비정규 144만원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158.2만원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7,662명 7,662명 11,243명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년 기순이익 평균 873만원 373만원 1,458만원 정단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۱	(평균)	(2.9명)	(4.3명)	(4.4명)	
월평균급여 정규직 144만원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정규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년 기순이익 평균 872만원 373만원 1,458만원 정단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정규직비율	73.2%	81.0%	70.8%	
교용보험 정규직 95.0% 정규직 90.6%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원2.9%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년 자리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	이러그그시	정규직 144만원	정규직 147만원	150 Ord ol	
자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82.9%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ㆍ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당기순이익 평균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결병판급역	비정규 100만원	비정규 92만원	158.2만원 	
지역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취약계층수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당기순이익 명균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당기순이익 명균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명규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고용보험	정규직 95.0%	정규직 90.6%	22.007	
(고용비율) (26.8%) (43.3%) (42.3%)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명균 당기순이익 명균 당기순이익 373만원 373만원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명균 802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명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가입률	비정규 50.9%	비정규 52.2%	82.9%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취약계층수	7,662명	7,662명	11,243명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무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명 평균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평균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고용비율)	(26.8%)	(43.3%)	(42.3%)	
무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영 평균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당기순이익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23,454만원	
· 부채 1,623만원 9,415만원 12,094만원 영명권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당기순이익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재	자본	4,007만원	4,607만원	11,361만원	
영 평균 1,935만원 373만원 1,458만원 당기순이익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무	- (출자금) (3,189만원)		(4,046만원)	(5,744만원)	
업 당기순이의 1,935만원 3/3만원 1,458만원 평균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9,415만원	12,094만원	
법 당기준이익 - 평균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영	평균	1 ೧೨೯૫೬೦)	979π} ંો	1,458만원	
지역사회 기여 평균 802만원 234.8억원, 262억원	업	당기순이익	1,950단편	3/3단전		
' ' ' ' ' 평균 802만원 ' ' ' ' ' '		평균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3억 6,764만원	
및 재투자 ^{정판 802만원} 펴규 881마워 펴규 800마워	지역사회 기여		료를 200개년	234.8억원,	262억원	
	Ę	및 재투자	성판 802만원	평균 881만원	평균 899만원	

3. 지속가능성의 과제와 선행연구

1) 지속가능성의 과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 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 공동의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3]. 이러한 개념은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대립의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취지이다[15].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지속가능성 범위를 담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산업개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가치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며, 경제적지속가능성은 편익 때문에 비용이 너무 초과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을 의미한다[4].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0년 5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었다[16].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이러한 정의는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정의한"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이루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지속가능성 범위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 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 형발전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주 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지표를 지속가능성의 개 념과 동일시하여 연구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 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지만, 협동조 합 7대 원칙과 지속가능성을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들 이 주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 으로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11],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적협동 조합의 지속가능성은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 활성화로서 중간 지원조직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독려. 둘째,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판로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마련. 셋째, 정부와 민간진영에 대한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관리하는 제도정비. 넷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간의 연계 구축. 다섯째, 사회적경제 영역의 인식확산과 캠페인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사례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는[7],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자발적 참여, 사회적 가치창출, 자본적 기반, 외부 환경적 기반 조성 등 4가지요소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8]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요인을 사회적 가치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을 성장요인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요인은 미션과 비전, 사회적가치 추구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조직요인과 환경요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조직원, 조직외부와 네트워킹 등이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 조합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재무건전성의 역할을 분석 한 연구[17]에서는 재무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이 사회적 가치창출의 주요 지표이며, 정보공시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능과 경제규 모,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법모색을 제안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분석 한 연구[18]에서는 부채비율은 ROA와 음(-)의 관계를, 영업외수익비율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높은 부채비율은 높은 이자비용을 수반하기 때 문에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영업외수익인 보조금과 기 부금 또는 조합비가 증가할수록 순이익이 증가시키므 로 높은 이자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 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하며, 영업외수익 중에서는 조합원이 반대급부없이 납입하는 조합비에 기부금과 같이 소득공제와 같은 세 제혜택을 권고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트워크의 중 요성을 강조한 연구[19]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거버 넌스 역량은 모든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미션 역량과 조직 역량은 협력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력파트너로서 조직역 량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20]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결성과 활동,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분할 조직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는 기존 협동조합의 인적자원과 운영경험을 공유하며, 각 조직을 재무적 파트너로 삼는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할 것을 제언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무재교육 [21], 서비스 품질[22], 정책 제안 등의 연구에서는[23]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홍보, 교육, 전담 지도자 양성, 협동조합적 영업개념 및 단계별 모델 개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의 구체화, 조세특례 등 세제상의 혜택, 성과보고의 의무화, 조합원 카테고리의 다양화, 전국 단위의 조직망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Ⅲ.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1.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변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협동조합기본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되어오고 있다. 2013년 3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년~2016년)이 발표되었는데,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을 목표로 시장진입(시장참여 기회 확대), 자금조달(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력양성(교육확대 및인력 유입 활성화), 연대·협력(협동조합 간 네트워크활성화) 등 4대 핵심분야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24].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은 2017년 3월 발표되었으며,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자생력 제고,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원크 강화, 인식개선 등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정부는 정책·사업 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였다[25].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년~2022년)은 2020년 3월 발표되었으며, "협동조합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등 5대 전략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의 "효과적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설계 방향으로 내실화하였다 [26].

3차에 걸친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나타 난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개선 및 여건 변화를 보면, 1 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주사업(비영리)을 하고, 60% 이하는 부사업(영리)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 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 연도별 추세를 모니터링하 여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계획하였으며, 사회적협 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이 추진되 었다. 또한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에 추진되었던 공 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를 확 대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 적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우선구매 확대를 적극 유 도하였으며,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 조합의 불분할 자산(조합원 사이에 배분할 수 없고 청 산 시 다른 협동보합 또는 연합회에 승계되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내부자금 보유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 리 · 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여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하였으 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을 인정한 등의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과정을 보면, 1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기반구축단계, 2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 내실화 및 생태계 조성단계,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규모확대단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한한 제도적 • 행정적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지속가능성 범위를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고자한다.

1)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가치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제2조제2호).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더 강조한다. 본래 사회적 목적은 공공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 또는 공동체의 편익이 포함되어 있다[4]. 그러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7원칙 "지역사회의 기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자체이기도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7원칙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 참여"와 연계되어 실행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노력하는 것은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게 되는데[27], 이는 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이어져 사회적협동조합의 생태계 형성과 발전으로사회적 지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이 확보될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해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참여를 통 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상호 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편익 때문에 비용이 너무 초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을 의미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반 영리법인의 속성을 배제할 수 는 없다.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영 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서 얻은 경제적 이 익을 통해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활동영역에 따라 거래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익활동은 사회적협 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제적 기반은 사회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동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 회적협동조합이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독립을 위해 시 장에서의 수익활동 만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결조건으로 시장활동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정부지원금, 공공 시장(우선구매), 후원금, 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 도를 통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시장활동을 통해 조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확보와 그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 하겠다[4].

협동조합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경제적으 로 공동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자 원 또는 자본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집 단이 주체가 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 으로 통제한다[25].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위 해 조합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며 잉여금을 내부 에 유보하여 조직의 상황에 맞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조 합원이 향후 조합 발전을 위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다[7], [11]. 3원칙과 더불어 2 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는 조합의 정책수립 과 의사결정에조합원이 참여하며 1인1표의 동등한 투 표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활동에의 민주 적 운용과 관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4원칙 "자율 과 독립"은 자율적 조합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1원 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와 2원칙 "조합원에 의 한 민주적 관리"에 의한 내적 역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역량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 특히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결과참여, 소유참여를지향해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을 운영해나가야만 한다[7], [11]. 특히 2원칙· 3원칙·4원칙의특성인 참여적 요소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장점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있는 안정적인 자원확보와 그 기반 형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하겠다.

3)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도시 및 산업개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4].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 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공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나 외부지원 등의 환경적 수용성이 요구된다. 환경적 수용성이란 사 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지역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환경적 수 용성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 업지원조례 등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정을 통 한 "지역사회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협력 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 트워크 형성인 "밀착형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세 가 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4].

협동조합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은 경영지원기관 및 컨소시엄, 협의체와 같은 다양한 독립적 단체를 구성하여 실행되는데, 개별 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조직의 장기적 존속의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7], [11]. 이러한 협동조합간 협동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증가시키며[27], 연대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연합체라기 보다는 연합체 이상의집단적인 공동행동과 상호책임이 결합됨으로써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또 다른 원칙으로는 5원 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이 필연적인 요소이다. 교육과 훈련은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요소이다. 여기서의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장 이용을 장려하는 수준이 아닌 협동조합 7대 원칙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이무엇이며,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전략적 경영을 위한 협동조합의 사업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상 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 고 교육과 훈럼 및 정보제공의 노력을 통해 협동조합의 힘을 강화시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 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 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이 변화해 야하는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 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 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 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 의되었듯이[3].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 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15].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 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이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에 있지만, 단순히 설립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사회공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는 사회적협동조합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상적인 경영활동만으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화롭게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지역 내 기여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고 지역사회의문제해결에 소극적일 때 지속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표 3.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별 · 산업별 설립현황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업(Q)과 교육서비스 업(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에 집중되 어 있고, 운수 및 창고업(H)의 경우는 강원도, 경기도, 경남, 인천, 서울에 만 각 1개소씩 총 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부동산업(L)은 서울(9개), 경기도(6개), 광주(1 개), 대전(1개), 부산(1개), 인천(1개), 제주(1개) 등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I)의 경우는 전국에 25개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경남, 부산, 세종, 인 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지역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 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는 전국에 29개 소 중 광주, 대구, 세종, 인천, 전북, 충북, 충남지역 등 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별 · 산업별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 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적 가치에 대한 노력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 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대외활동 역시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 내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상호성을 강화하여지역 내 편중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산업별 유형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익과 더불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 기는 하지만, 이윤창출과 공익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는 없다. 이윤창출은 경제적 소유지분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을 위한 자원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부가적으로 인증을 통한 지원금과 관련기관 으로부터의 저금리 대출과 보증지원 제도가 있다. 그러 나 부가적 자금조달은 설립초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 문에 초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는 어려운 과제이다. 표 4. 년차별 협동조합 실태조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운영율은 2차 실태조사(2014년 말) 54.6%, 3차 실태조사(2016년 말) 53.4%, 4차 실태조사 (2018년 말) 54.2% 등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본과 부채의 규모를 보면 3차 실태 조사 4,607만원과 9,415만원, 4차 실태조사 11,361만원, 12,094만원 등 자본 규모보다 부채규모가 오히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균 당기순이익은 2차 실태조 사 1,935만원에서 4차 실태조사 1,458만원으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협동조합수가 증가되고 평균 매 출액 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의 경제적 성과는 미흡 한 결과라 하겠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고려하면 경제적 성과 를 강조하기에는 모순이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이익의 배분이 아닌 지역사회 기여 및 재투자를 위한 자원이 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료원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의 제품구 매에 대한 내역을 집계하여 발표하게 하는 적극적인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28].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1조 6,225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2.85% 수준에 이르며, 2021 년에는 2,89%를 계획하고 있고, 향 후 5.0% 수준을 목 표로 하고 있다[29].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이와 유 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이 이러한 정부 차원의 꾸준한 노력에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자구책으로는 공익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생산물의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요즘의 소 비자는 착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 나 착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착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호감을 가진 소비자라 하더라도 품질이 기대에 못미치게 되면 수요는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우선구 때 비율을 높일 것이며, 지역사회에서의 가치있는 소비로 이어져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야 한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개별 협동조합이 서로 협 력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조직의 장기 적 존속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확대를 통 한 신뢰 형성으로 연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연합체 이상의 집단적인 공동행동과 상호책임이 결합 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활성화는 교육, 홍보, 경제적 협력을 통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협동조합 간 협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기 사회적협동조합으 로서는 하나의 장벽일 수 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의 수가 전국적으로 20개이며, 서울 6개소, 경기도 5개소, 대전 3개소, 그리고 부산, 전남, 제주, 광주, 경남, 충남지역이 각 1개소이며, 강원,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북지역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 기획재정부의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4차 실태 조사에 의하면[26], 연합회 및 협의회 가입비율은 39.9% 수준이며, 미가입 사유로는 가입 필요성을 못 느 낌 56.6%, 정보 부재 27.4%, 대표성 있는 연합회가 없 음 1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간 연대 사업(원자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브랜드)의 경우 29.9% 수준이었다. 정부 지원정책 참여 현황에서는 48.3%가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참여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인력지원 순으로 조사되 었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 수준이었다. 정책미활용 비율은 51.7% 수준인데 주요 사유로는 정 보부족(36.0%), 까다로운 절차(24.2%), 필요성 못느낌 16.1%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협동조합 간 파트 너십이 매우 저조한 상황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연대 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과는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협 동조합 간 연대사업이나 정부정책 참여비율이 저조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 조합의 지역사회 연대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 끌어 내고자 하는 것은 정부부처 및 지역내・외 사회적 협동조합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정부정책의 정보공유와 참 여를 유도하고 협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본연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은 곧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이라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적 ·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 할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 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 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원크 상호성 강화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원론 적 제시방안이기는 하지만, 협동조합 규모확대단계인 3 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4차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는 무엇보다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과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 수 행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재조명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ttps://www.coop.go.kr/COOP/state/guild Establish. do?m_cd=D009
- [2] https://www.law.go.kr(Cooperative Basic Law)
- [3] Up Im, Dong-Hyun Kim, Social Enterprise and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Seoul; Jip Moon Dang, Press, 2013, p.47.
- [4] Sang-Young Lee, "A Study on the Social Enter preneurship and Social Environmental Support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Master's Dgree, The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erpreneurship, Hoseo University, Seoul, 2014.

- [5] Chae-Rim Kim, June-Ho Jang, "A Study on the Sustainablity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Society for Community Development*, Vol.2. No.2, pp. 141–150, 2017.
- [6] Eun-Ju Choi, Ji-Yeon Jang, Seung-Kwon Jang, Jin-Seon Seo, "Value Creation of Korea's Social Co-operatives: An exploratory study og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analysi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Vol.9, No.4, pp. 29-59, 201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 d=NODE09281918
- [7] Hi-wan Le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Cooperatives and Its Developmental Proposals in Korea," System and Economy, Vol.7, No.2, pp. 205–225, 2013.
- [8] Yee-Un Kang, "Sustainability of Korean Social Cooperatives," Master's Dgre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4.
- [9] Chan Sun Park, "A Study on the Generation and Growth Factors of Social Cooperatives in Korea," Master's Dgree,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Seoul, 2019.
- [10]Hyo Seog Hong, "Management Disclosure Status and Tasks of Social Cooperatives: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nam Reg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36, No.3, pp. 233–256, 2021. http://dx.doi.org/10.23839/kabe.2021.36.3.233
- [11]Kwangdong Park,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Cooperatives and legal issues," *Ajou Law*, Vol.9, No.3, pp. 63–86, 2015. 10.21589/ajlow.2015.9. 2.63
- [12]Cheng-Lin Du, Sug-In Chang, Sung-Pil Bae and Ho-Gyu Choi,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5, No.1, pp. 35–45, 2020. http://doi.org/10.21186/IPR.2020.5.1.035
- [13]Chung-Ok Koo, "A Study on the Financial Reporting of Cooperatives: Focusing on Social Cooperatives," Cooperative Economics and Management Review, Vol.49, pp. 29–53, 2018. http://dx.doi.org/10.35443/cmr.2018.49.002.
- [14]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list.do?board_code=BO068&category_id=CA908&m_cd=D020
- [15]Chae-rin Kim, June-ho Jang,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The Korea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Vol.42, No.2, pp. 141–150. 2017.
- [16]https://www.law.go.kr(Law of Sustainability Development)

- [17] Jun-Hee Park, The Effec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ustainability on the Social Value Creation, Master's Dgree,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Seoul, 2020.
- [18]Eun-Ju Choi, Ji-Yeon Jang, Seung-Kwon Jang, Jin-Seon Seo, "Value Creation of Korea's Social Co-operatives: An exploratory study og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analysi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Vol.9, No.4, pp. 29–59, 201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 Detail?node Id=NODE09281918
- [19]YoonKyung Min, Kyung-Zoon Hong, "Social Cooperatives's Organizational Capabilites and Cooperative Network;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2, No.2, pp. 65-95, 20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9349207
- [20]DeokSoo Lee, "Sugges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Journal of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3, No.5, pp. 135–144, 2018. http://dx.doi.org./10.9723/jksiis.2018.23.5.135
- [21] Hyo-Jin Shin, "The Influence of Career-Education on Job Satisfac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Center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Practice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Climat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 257-265, 202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257
- [22]Chun Ok Jang, Jung-Eun Le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urchasing Decision Factors and Quality Satisfac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 251–256, 2021.http://dx.doi.org/10.17703/JCCT.2021.7.4.251
- [23] Hyeong-Soo Jeon, "Problems of Social Cooper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s Studies*, Vol.30, No.1, pp. 61–78, 2012. DOI: 10.35412/kjcs.2012.30.1.003
- [24]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th Cooperative Master Plan(press release), http://www.moef.go.kr/sch/Sch/Main.do
- [25]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th Cooperative Master Plan(press release), http://www.moef.go.kr/sch/sch/Main.do
- [26]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th Cooperative Master Plan(press release), http://www.moef.go.kr/sch/sch/Main.do
- [27] Tae-In Jung, Soo-Yeon Lee, Economic of

- Cooperation, Redian Press, Seoul, 2013.
- [2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Guidelines for Preferential Purchase of Social Cooperative Products, 2019.01. http://www.moef.go.kr
- [2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ublic Institutions Social Enterprise Products 2020 Purchasing Performance and Purchase plan for 2021 (press release), 2021.04. http://www.moel.go.kr

※ 이 논문은 2020년,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